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그로쓰힐자산운용

2. 제재조치일 : 2024. 10. 1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이해상충 관리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

그로쓰힐자산운용㈜는 「위탁재산운용지침」에서 일임 및 자문재산과 회사의 고유재산의 동일 종목을 보유·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(동 지침 제8조 제2항)하면서 예외규정*을 두고 있으며, 「상품승인위원회 운용지침」에서 새로운 운용상품을 설정하거나 기존 운용상품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 상품승인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.

* 고객이 주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한 경우(동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), 공모주 등 수요예측의 참가로 인해 배정받아 보유·매매하게 된 증권의 경우(동 지침 제8조 제2항 제4호) 등

하지만 고객위탁재산 운용 시 고객이 주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한 경우 및 공모주 등 수요예측의 참가로 인해 배정받아 보유·매매하게 된 증권의 경우 보유하는 종목의 매도 순서 등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, 상품승인위원회 의결 시 상품을 제안한 위원의 경우에도 동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존재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.

따라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이해상충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